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가단502017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A 주식회사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병정, 류정원
변론 종결 2021. 1. 28.
판결 선고 2021. 3. 25.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91,684,926원 및 그 중 90,292,260원에 대하여 2019.6. 22.부터 2020. 2. 10.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 의 2019. 4.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9. 4. 25. 접수 제28947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수출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8. 5. 1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회사가 C으로부터 대출받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액 90,000,000원, 보증채무최고액1억 1,700만 원, 보증기한 2019. 5. 20.로 정한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5. 21.경 피고 회사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수출신용보증서상 보증사고 발생

1) 이후 피고 회사는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토대로 C으로부터 변제기한 2019. 5. 21.로 정하여 무역금융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회사는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2019. 5. 22.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위 수출신용보증서상의 신용보증사고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19. 6. 21. C에게 위 신용보증서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 90,292,26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부수적 채무 등

-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용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비용잔액은 1,392,666원이다.
-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약정지연이율은 연 10%이다.

라.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등

- 1) 피고 회사는 2019. 4. 25.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B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2)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9. 4. 25. 접수 제28947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다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합계 91,684,926원(= 대위변제금 90,292,260원 + 채권보존비용 잔액 1,392,66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0,292,26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9. 6.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0. 2. 10.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약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다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E(병합)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배당표에 따르면 피고 B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선순위 담보권자들만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잔존 담보가치가 없어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목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보이고, 피고 B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를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강민

별지

1. 경기도 파주시
공장용지 658㎡
2. 경기도 파주시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공장
1층 795㎡
3. 경기도 파주시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공장
1층 165㎡
2층 165㎡